



# 부산지역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

**2020년 4월 22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문의 \_ 이숙건 010-2566-0295

## 사회

강동목 교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주제발표

- 전국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  
- 이숙건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운영현황 및 제언  
- 김세영 센터장(부산근로자건강센터)

## 토론

- 도용희 시의원(부산광역시의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주 최 부산광역시의회 도용희 시의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후 원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 [차 례]

■ 토론회 순서 .....	1
■ [발제1] 전국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 .....	3
이숙견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발제2]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운영현황 및 제언 .....	13
김세영 센터장 / 부산근로자건강센터	
■ [토론1]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 례안 .....	33
도용회 시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 ● 토론회 순서 ●

사회 : 강동묵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14:00 ~ 14:00	소개	사회자
14:10 ~ 14:30	발제 1 지자체 노동안전보건정책 및 현황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14:30 ~ 14:50	발제 2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운영 및 제언	김세영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14:50 ~ 15:00	휴식	
15:00 ~ 15:30	토론발표	도용희(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15:30 ~ 15:50	전체토론	다함께
15:50 ~ 16:00	마무리	사회자

## 발제 1. 전국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1. 부산시의 사업체 수 및 산업(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 부산의 100인 미만 산업별 종사자 수 규모는 77%에 해당되며, 30인 미만은 57%으로 부산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의 2명 중 1명에 해당됨(2016년 ‘부산시의 산업별 종사자수 통계 자료’). 부산지역에서 81.6% 사업체가 5인 미만이며, 10인 미만은 92.5%(전국은 91.5%임)에 해당됨.

〈표 1〉 5인 미만 기업체 및 종사자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산	82.8	30.9	82.3	29.7	81.7	29.4	81.6	29.8
전국	81.3	28.1	80.7	26.8	80.3	26.8	80.3	27.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사업체 조사

### 2.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현황

#### 1) 2018년 산재 통계<sup>1)</sup>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률
○ 사망자수	2,142	1,957	185	9.5
- 사고 사망자수	971	964	7	0.7
- 질병 사망자수	1,171	993	178	17.9
○ 재해자수	102,305	89,848	12,457	13.9
- 사고 재해자수	90,832	80,665	10,167	12.6
- 질병 재해자수	11,473	9,183	2,290	24.9
○ 근로자수	19,073,438	18,560,142	513,296	2.8

#### 2) 규모별 산재 현황

-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음. 2018년 산재통계에서 전체 재해자의 78.2%, 사고성 재해 사망자 수는 76.6%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더 많

1) 재해자 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됨. 사망자 수 및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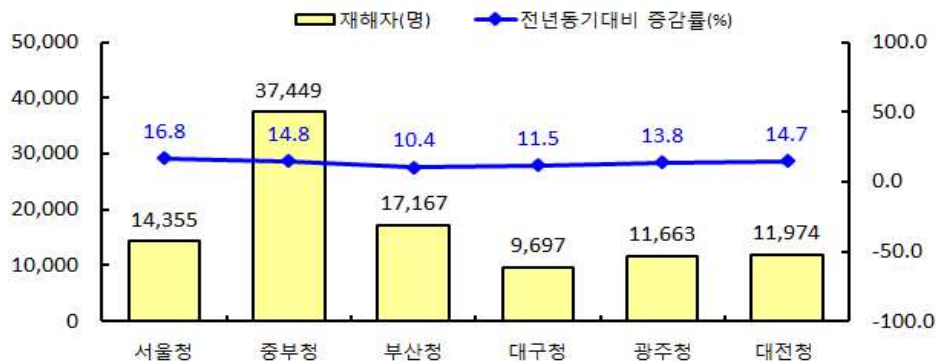
은 재해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2018년 산업재해 통계 중 규모별 현황

구분	재해자 수(명)		사고성 재해 사망자수	
	5인미만	50인 미만	5인 미만	50인 미만
2018년	32,568(31.8%)	47,557(46.4%)	322(33.1%)	423(43.5%)

3) 지역별 산재현황(2018년 노동부 산재발생 통계 자료)

○ 재해자



○ 사망자



3. 지자체별 노동안전보건 현황

1) 지역별 노동안전보건관련 조례제정 현황(2019년 민주노총 지자체 정책실 연구보고서 참조)

- 전국 17개 지자체에 요청하여 12개 지자체에서 회신된 내용으로 정리하였음.
- 별도의 노동안전보건 조례는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와 경남, 서울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안은 없음. 대부분 노동자 권리 및 복지증진 관련 조례가 있으며, 그 안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선언적 내용만 있음.

-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으며, 인천의 충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조례는 없으나 일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업종직종별 별도의 노동조건개선 조례는 제정되어있으나 주된 내용은 복지나 근로조건 관련한 사항으로 해당 직종에 대한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이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함.

	노동안전보건 별도조례	감정노동조례	노동자건강증진조례	업종 직종별 노동조건 개선 조례	화학물질 조례
서울	안 상정	○	×	건설, 소방공무원, 장기요양요원, 프리랜서, 택시	×
부산	×	○	×	건설, 나잡어업,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택시, 예술인	○
대구	×	○	×	건설,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
인천	×	×	×	건설, 보호자없는병원,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예술인	○
광주	×	○	×	건설, 고령자경비원, 소방공무원	○
대전	×	○	×	건설, 사회복지사, 예술인, 장기요양요원	○
울산	×	×	×	건설,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예술인, 장기요양요원	○
세종	×	×	×	건설, 사회복지사	×
경기	○	○	○	건설, 이동노동자,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장기요양요원, 청소년상담사	○
강원	×	×	×	건설, 사회복지사, 진폐노동자	○
충북	×	×	×	사회복지사, 진폐노동자	○
충남	×	×	×	건설,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장기요양요원, 진폐노동자, 청소년지도사	○
전북	×	○	×	건설,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예술인, 장기요양요원	○
전남	×	○	×	건설,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예술인, 장기요양요원, 중소기업노동자	○
경북	×	×	×	건설, 사회복지사, 소방종사자, 진폐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
경남	○	○	×	건설, 돌봄노동,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	○
제주	×	×	×	사회복지사, 문화예술인, 장기요양요원	×

## 2) 노동안전보건조례 비교

### ① 현황

- 경기 : 2018년 3월 20일 가장 먼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 경남 : 2019년 11월 7일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 서울 :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발의하여 제정

### ② 조례가 포괄하는 대상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세 개의 조례와 조례안에서 모두 포함. 기타 주요한 포괄 대상에 있어서는 특수형태 근로자나 산재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조례안의 경우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해야할 역할과 사업주로서 수행해야할 역할을 각각 규정. 이는 지자체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가짐과 동시에 원청및 발주자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통해 산하 관련 기관의 안전보건활동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③ 사업주의 역할

-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지정과 유해환경 작업 전 사전 교육, 노동안전지킴이(경기)나 노동안전조사관(서울)의 사업장 출입 허용에 협력할 것을 사업주의 협조의 형태로 명문화, 경남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주의 역할이나 협조에 대한 항목은 없음
- 서울시 조례안에서는 사업주의 협조 부분에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하청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참여에 대해서 사업주의 협력을 강조
- 경기와 경남에서는 노동안전보건 혹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

## 3)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담당기구 및 조직 현황

- 지자체 내에 노동안전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지역은 서울(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과 경기(노동국 노동권익과)외에는 없다. 경기는 노동안전보건 관련조례 제정 후 전담부서를 설치한 상황이라 형식과 내용적으로 진전된 지자체이다. 서울은 노동안전보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산업노동안전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다. 경남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 경제국 노동정책과에서 산재 예방 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난안전이나 안전정책, 노사협력, 환경정책, 보건복지 부서에서 업무를 파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일관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산은 전담부서는 없고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 담당관이 일정 수준에서 관련 업무

를 수행하고 있기에 민생노동정책관의 인원 충원을 통하여 전담 노동안전보건팀 구성이 필요하다.

#### 4) 타 시도 노동자 안전관련 지방행정 내 기구, 조직현황

##### ① 서울시

2019년 1월 산업안전팀 신설, 행정1부시장 - 노동민생정책관 - 노동정책담당관내 '산업안전팀' 이 구성, 4명의 전담인원(팀장 1인, 주무관 2인, 노동안전조사관 1인) 있음.

주된 업무는 산업노동안전 대외기관 민관협력, 산업노동안전보건 현안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수립 및 시행,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기준 확보 지원조례 등 규정 관리, 산업노동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동현장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분야별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직장내 괴롭힘 지침 및 매뉴얼 관리 운영, 산업노동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이다.

##### ② 경기도

2019년 5월 행정2부지사 산하에 노동국 신설

노동국내 3개과 노동정책과/노동권익과/외국인 정책과를 구성하였고 노동권익과 내에 2개팀(노동권익보호팀, 산업재해예방팀)과 1개의 센터(노동권익센터)가 있다.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주로 노동권익과내에 노동권익보호팀(팀장 1인, 주무관 3인)과 산업재해예방팀(팀장 1인, 주무관 2인) 등 2개의 팀과 노동권익센터(센터장 1인, 주무관 7인)에서 수행함

##### ③ 경남

일자리 부시장 산하 일자리경제국 내 노동정책과가 2019년 1월 신설되었으며, 노동정책과 내 노동복지담당 3인의 인력이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중임. 관련업무로 감정노동자 보호업무(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시책 추진,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수행중임.

#### 5). 지자체 사업주로서의 의무준수

- 서울과 강원, 충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공행정 업무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소속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적용 대상별노동자들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체제와 법정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지켜지기는불가능
- 서울시와 강원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용대상 인원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전, 세종, 충남의 경우에는 일부 산하기관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 외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및 산하 기관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대한 파악이



미진하거나 혹은 법규정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안법상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 수준이 매우 미흡

- 지자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과 법적용항목에 대해서 지방행정 소속 노동자 안전 관련 담당부서와 조직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

#### 4. 지자체 기반 노동안전보건 및 지역 안전관련 사업 사례

##### 1) 지자체 중심의 지역 안전보건사업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사업
- 화성시 근로자보건센터
- 시흥스마트허브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
- 경기도형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경기도의료원내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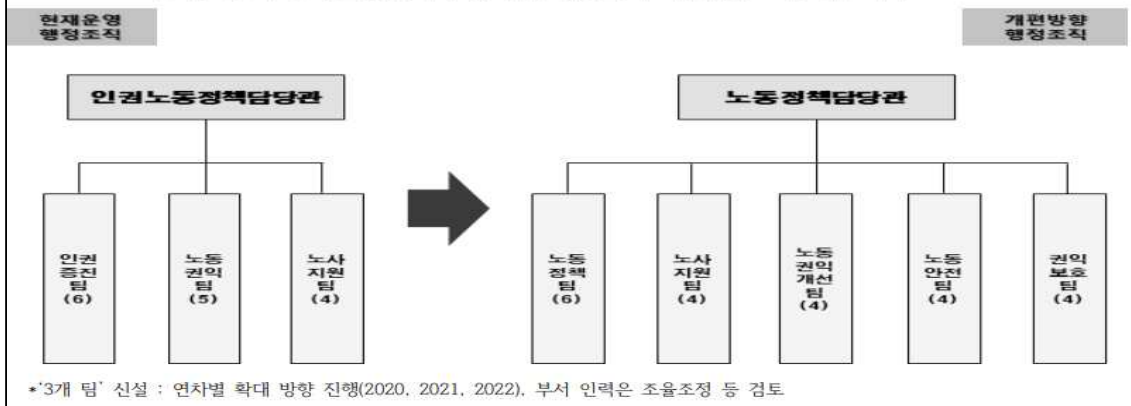
##### 2)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안전보건사업 사례

- 울산북구안심산단만들기
- 경남 김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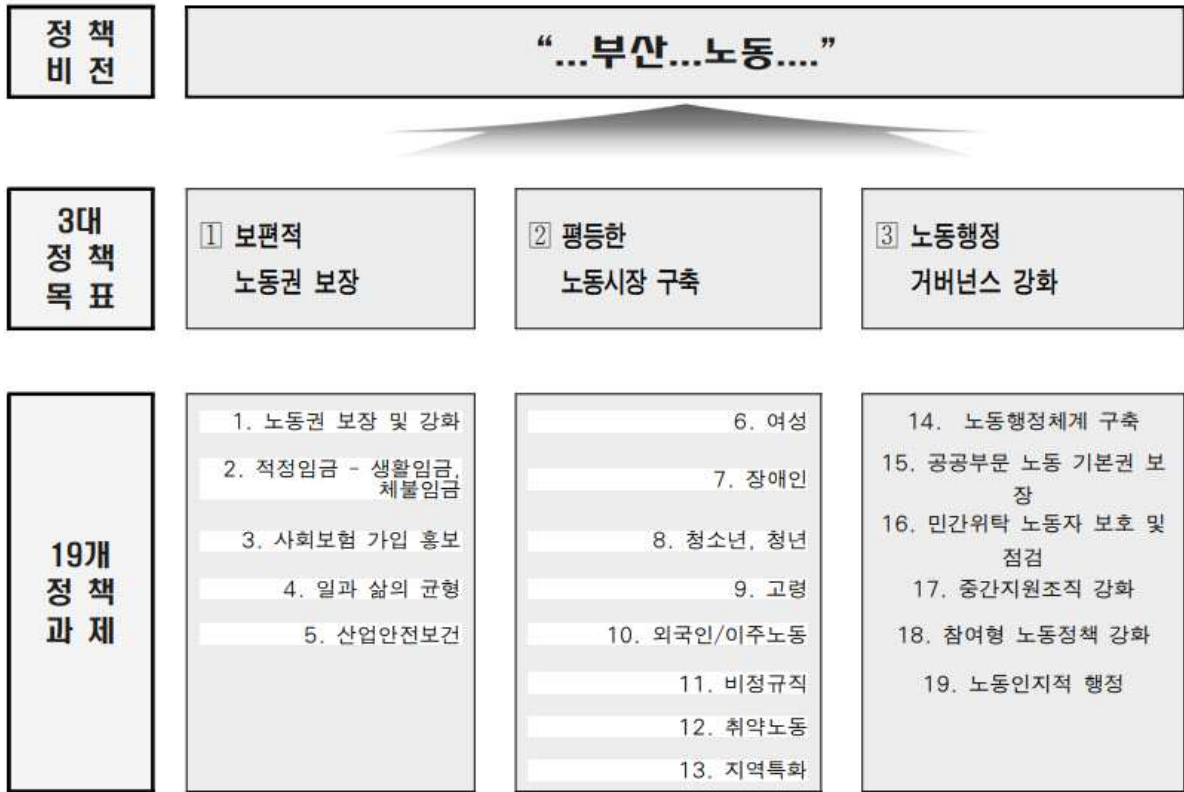
#### 5. 부산시 노동기본계획 연구 보고 내용

- 부산시 노동정책과 정책 수립 위한 행정기구 강화와 전문화
  - 부산시 노동정책 전담 행정기구 확대 강화 필요(노동정책과로 확대 개편, 자치법규 개정)
  - (기존)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과) - 총 9명(담당 과장 포함)
    - : 노동권익팀(5명), 노사지원팀(4명)
  - (개편) '노동정책담당관' (과) - 총 24명(담당 과장 1인, 노동협력관 1인 포함)
    - : 2020년 노동정책팀(6명), 노사지원팀(4명), 노동권익개선팀(4명)
    - : 2021년 노동안전팀(4명), 권익보호팀(4명)

[그림 1] 부산시 노동정책 수행 위한 행정조직 개편(안) - 연차별 확대



(그림 2)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



\*주: 1. 부서 신설 등은 사업 영역과 내용 따라 판단(2019년 하반기 이동노동자 쉼터 1개소 개소 : 대리운전)  
 2. 노동상담소 : 기존 양대노총(한국노총 5곳, 민주노총 3곳) 보조금 지원 사업형태 운영 중  
 3. 근로자종합복지관 : 기존 한국노총 부산본부(19명)에서 2003년 9월 개관 건물 (6차 위탁) 운영 중  
 4. 노동복지회관 : 기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14명)에서 1986년 9월 개관 건물 (6차 위탁) 운영 중

〈표 14〉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 3개 목표, 19개 분야, 38개 단위 과제 제시안

3개 목표	19개 분야	38개 단위 과제	사업 성격	정책 영역 사업 필요성	
				노동자	의견 그룹
①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 (5개)	1. 노동기본권 보장 및 강화	1-1. ILO 기준 단결권 보장 강화 사업 1-2. 노동단체 설립·운영 지원 사업	사업 조례사업	59.9점	76.0점
	2. 적정임금 - 생활임금, 체불임금	2-1. 생활임금 적용 확대 사업 2-2.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등: 동네방네 노무사 활성화	사업 사업	64.5점	76.4점
	3. 사회안전망	3-1.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캠페인 3-2.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점지원 사업	조례사업 조례사업	62.6점	73.6점
	4. 일과 삶의 균형	4-1. 장시간 노동해소와 노동시간 단축 사업 4-2. 불안정노동자 등 취약층 휴가비 지원 정책	사업 사업	63.9점	75.7점
	5. 산업안전보건	5-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조례) 5-2. 감정노동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	조례사업 사업	64.8점	80.7점
	6. 여성	6-1.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6-2. 공공기관별 성별 임금공시제	사업 조례사업	13.3%*	8.7%**

## 6. 산재예방 활동에서의 지자체의 역할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3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산안법 29조 중 9항 제외한 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규정 적용이 제외
-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 등 행정업무가 현저히 다르고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예로 학교급식(기관구내 식당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지정 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물청소 및 방역(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개정 산안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로서 책임조항은 지자체에도 적용. 지자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사계획, 설계, 시공하는 전 단계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반영하도록 의무가 부여됨.

- 법취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고의적인 해태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
- 공공행정업무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대하여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범위반에 대한 다툼을 야기하기도
-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소극적 자세, 산안법 적용대상별 노동자들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체제 구성과 법정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불가능

-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산안법 적용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 지방정부가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체계 변경, 예산 반영 등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가 지방 행정 전반에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의 관점을 도입하고 노동안전보건과 지역안전을 포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해야

## 참고자료 1.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 조례

-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가 유일(2019년 4월 29일 제정).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이나 건강증진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국 21개의 근로자 건강센터가 일부 수행하고 있고 있으나 지자체의 개입과 역할은 미미
-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산하 경기도 의료원 등의 자원을 소규모 사업장이나 관리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직업건강 및 보건관리에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도지사의 책무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소규모사업장노동자(50인 미만 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 노동자등및 실직자 등(이하 “노동자 등” 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 : 건강증진 기본계획
-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화성시 근로자보건센터’를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이주노동자, 실직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경험하는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주기적인 개입과 피드백을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문제 사례관리의 모델을 모색·경기도 의료원내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도형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시도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등의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자등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노동자등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3.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
4. 노동자등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노동자등건강 관련 연계사업
6. 그 밖에 노동자등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건강증진센터) ① 도지사는 노동자등의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등의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따른 경기도 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건강관리지원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자등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노동자등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3. 노동자등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노동자등건강증진사업의 성별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제9조에 따른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6. 그 밖에 노동자등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위원회) ① 경기도 노동자등의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등건강증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점검사항
4. 그 밖의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제 2.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운영현황 및 제언

김세영(부산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 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 근로자건강센터의 필요성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취약
- 사후관리 미실시로 인한 직업성 질환에 관한 근로자 알권리 침해
- 전국 21개소 근로자건강센터와 21개소 분소 운영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
- 직업병 예방으로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확보
- 산재 예방 전문기관으로의 확립



## 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 ○ 설립목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기초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업무상 질병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 운영재원

- 산재예방 및 보상보험료의 기금

### ○ 운영형태



## 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 ○ 추진근거

- 「산안법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제3호에 고용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13년5월)
-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호)에 센터 정의,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 핵심기능

구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포커스	질병의 사전예방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합병증예방·재활
주요영역	질병에 이환되기 이전 상태에서의 관리	질병의 악화 방지	질병치료후 추가적인 합병증 예방
보건사업 (예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재활 및 직장복귀

## 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 ○ 주요지원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 요인 개선
  - \* 작업관련 뇌심 및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상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관리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호>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③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합용**할 수 있다.

## 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 ○ 사업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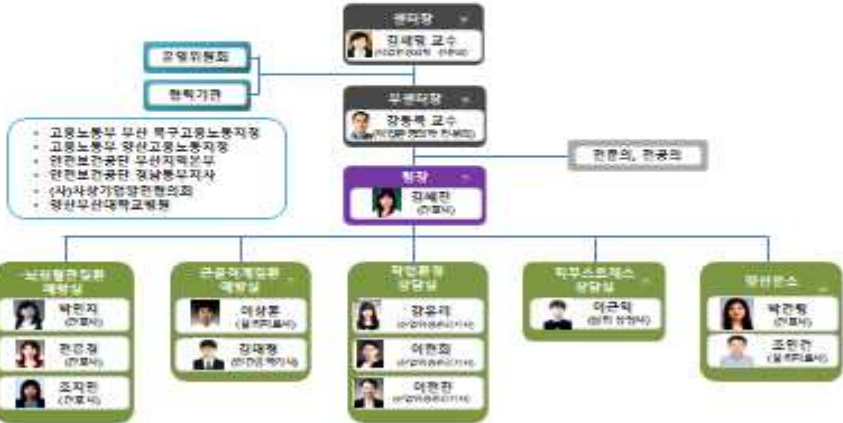
- (2005년) 정부 공공보건의료확충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계획 수립
- (2007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2010년까지 4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 (2011년) 운영예산을 산재예방기금으로 변경하고, 「근로자건강센터」로 개칭,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설치·운영
- (2014년)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2016년)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변경(인제대→부산대)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신규 설치·운영(5개소)
- (2017년) 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분소 설치·운영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신규 설치·운영(16개소)



# 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센터명 (관할지청)	운영기관	설치 산업단지	센터명 (관할지청)	운영기관	설치 산업단지
경기서부(안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시화국가산업단지	부산(부산북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사상공단
인천(중부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남동국가산업단지	경북북부(구미)	구미강동병원	구미국가산업단지
광주(광주청)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허남산업단지	전남동부(여수)	원진속색병원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구(대구서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서산업단지 (1-3차)	대전(대전청)	근로복지공단 대전신채병원	대덕테크노밸리
경남(창원)	㈜더직업환경 의학센터	정림국가산업단지	서울경서(서울남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문래형강단지
서울(서울권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수출산업국가 산업단지	경산(대구청)	(사)한국산업 강호협회	경산일반산업단지
경기동부(성남)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남일반산업단지	전주(전주)	(사)한국산업 강호협회	전주일반산업단지
충남(충신)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온천국가산업단지	원주(원주)	(사)한국산업 강호협회	원주수산산업단지
대전(대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정산업단지	제주(광주청)	제주한리병원	제주상록희관
충남(천안)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안일반산업단지	경기북부(의정부)	(사)한국산업 강호협회	경주일반산업단지
경기남부(경기)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색산업단지			

# 부산근로자건강센터(양산분소) 조직 구성



## 2. 부산지역 산업현장

### 부산지역 2018년 산업재해 현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 평균 재해율 **0.54%**  
 부산북부 재해율 0.68%, 양산지역 재해율 0.70%  
 동년도 전국 평균 **0.48%** 보다 높음

(기준년월 2018.12)

고용지형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합계	383,712	2,919,254	17,167	292	0.59
부산성	69,024	511,229	2,533	46	0.50
부산동부	48,826	334,276	1,605	23	0.48
<b>부산북부</b>	<b>38,132</b>	<b>285,641</b>	<b>1,950</b>	<b>29</b>	<b>0.68</b>
양산	50,426	390,889	2,726	48	0.70
울산	56,554	490,648	3,100	54	0.63
진주	37,949	208,928	1,360	26	0.65
창원	65,024	519,046	2,517	45	0.48
통영	17,777	178,597	1,376	21	0.77
전국평균					0.54%

## 2. 부산지역 산업현장

### 부산광역시 사업장 현황

고용지형	시군구	사업장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부산성	중구	7,052	137	7,189	32,583	19,020	51,603	138	25	163	0.32
	서구	4,327	84	4,411	18,594	13,100	31,694	134	95	229	0.72
	동구	6,290	185	6,475	32,119	27,669	59,788	154	30	184	0.31
	영도구	4,626	191	4,817	23,909	19,984	43,893	220	67	287	0.65
	부산진구	16,700	266	16,966	70,798	37,388	108,186	393	98	491	0.45
부산동부	남구	8,726	165	8,891	38,310	27,859	66,169	260	84	344	0.52
	사하구	11,578	339	11,917	59,732	37,247	96,979	488	112	600	0.62
	연제구	8,193	162	8,355	34,280	18,667	52,947	162	56	218	0.41
	동래구	9,204	162	9,366	38,451	22,994	61,445	220	69	289	0.47
	해운대구	15,692	261	15,953	72,363	34,711	107,074	369	96	465	0.43
부산북부	금정구	9,273	166	9,439	39,298	20,996	60,294	229	44	273	0.45
	수영구	6,101	85	6,186	25,016	12,287	37,303	155	36	191	0.51
	기장군	7,689	192	7,881	40,398	27,755	68,153	289	93	382	0.56
	북구	6,697	107	6,804	29,733	13,632	43,365	184	26	210	0.48
	<b>강서구</b>	<b>15,775</b>	<b>428</b>	<b>16,203</b>	<b>80,127</b>	<b>72,724</b>	<b>152,851</b>	<b>855</b>	<b>244</b>	<b>1099</b>	<b>0.72</b>
<b>사상구</b>	<b>14,931</b>	<b>194</b>	<b>15,125</b>	<b>65,750</b>	<b>23,675</b>	<b>89,425</b>	<b>577</b>	<b>60</b>	<b>637</b>	<b>0.71</b>	
합계	113,854	1,124	114,978	593,452	339,658	933,110	4,794	1,254	6,048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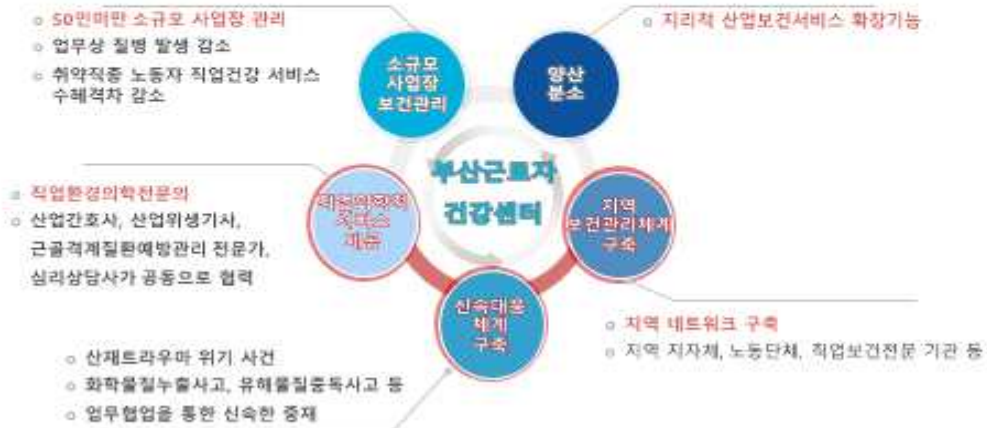
## 2. 부산지역 산업현장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특성

구분	업종(주요부류)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망(인수)	재해(인수)	사망(인수)	재해(인수)
1	건설업	21	1,086	53	2,977
2	기계기구·비금속제품제조업·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9	760	3	189
3	기타의 각종사업	3	710	0	53
4	도스레 및 스키자전거승차사업	4	474	0	87
5	기타의 종합건설사업	3	358	1	51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	0	986	0	75
7	선박제조 및 수리업	2	147	1	35
8	복기 및 사탕기지사업	2	146	0	129
9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2	132	1	39
10	식료품 제조업	2	117	0	37
11	장고 및 냉수냉동 시스템업	5	115	4	96
1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0	105	0	13
13	사면시스템업	3	99	1	24
14	복합 및 수장업	2	90	4	49
15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	2	83	1	17
16	편곡기류시스템업	2	56	0	11
17	편곡기류기구 전자제품개발과 종합기계기구정밀기구제조업	1	46	0	16
18	교육시스템업	0	36	0	8
19	금방 및 보정업	2	91	1	7
20	의류 도자기 시멘트제조업	0	15	1	4
21	통신업	0	10	0	2
22	물건 판매업 또는 판매용 가공업	0	9	0	0
23	유통산업 및 등대업	0	8	0	0
24	코르크, 단판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	6	0	1
25	무명	0	5	0	0

## 3. 사업의 목적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통한 업무상 질병예방



## 4. 사업의 목표

구분		세부사항	목표치
			이용자수(명)
기본사업		직업병 및 기초 질환 상담	7,000
		비·심혈관 질환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	
특성화 사업	집중관리 타겟 사업	작업복귀 프로그램(근골/심리)	20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100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100
		이동노동자 건강서비스 제공	50
	지역특성화 사업	고무, 주물, 기계(부품/금속), 건설업	500
		사후관리	300
		양산분소	1,200

※ 안전보건공단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부산근로자건강센터 사업모형

#### 기본 사업

- 직업병 및 기초질환 상담
- 뇌·심혈관 질환 예방
- 근골격계질환 예방
- 직무스트레스 관리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

#### 기타 사업

-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
- 산업재해 트라우마 지원
-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지원

부산근로자  
건강센터  
(양산분소)

#### 집중관리 타겟 사업

- 작업복귀 프로그램
- 급식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건강상담
- 도담도담센터 지원

#### 지역 특성화 사업

- 주물
- 고무
- 기계(부품/금속)
- 건설업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양산분소 사업모형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최종 목표	부산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업무상 질병 예방 및 산재 근로자 작업복귀	
추진 과제	기본사업 표준화	※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트널 프로그램 제공 뇌심혈관계 예방파트: "나의 건강수첩 완성하기" 작업환경파트: "주치의 사업장 가꾸기" 근골격계 예방파트: "씨류 트레이닝 그룹운동" 심리상담파트: "스트레스 토닥토닥"
	사업장별 맞춤형 접근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의 정착화 및 확장 작업환경컨설팅 지도 특수직종 유소견 근로자 사후관리 실시
	고위험직종 건강수준향상	사상구형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이동노동자 건강서비스 제공
	작업복귀 프로그램 운영	산재근로자 작업복귀 프로그램 운영 (신체기능 회복 및 정신건강 회복)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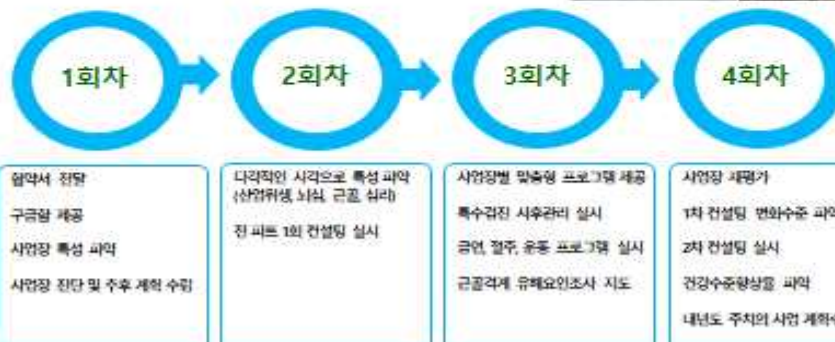
### 기본사업 표준화

뇌심파트	작업환경관리	근골파트	심리파트
<p><b>나의 건강수준 향상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로 건강관리 실시</li> </ul> <p>1회: 설문, 설문, 연바다검사 2회: 분게스태를 검사 3회: 건강생활수칙 검사 4회: 최종 재검사</p> <p>* 1회 검사와 결과를 비교 건강수준향상을 평가 자기변화 유도</p> 	<p><b>주치의 사업장 가꾸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개선팀 지도</li> </ul> <p>1회차, 2회차 구분 지도 보조구 신청 및 사용방법 사업장 표시판 제작/제출</p> 	<p><b>비규 프레이밍 그룹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4회 그룹 운동 지도</li> </ul> <p>소규모(5-6명) 그룹 운영 하루 30분 진행 안원수별 기구세트(5-6가지) 한가지 기구를 1분 운동 (40초 운동, 20초 휴식) 연바다 죽점을 통해 비교분석</p> 	<p><b>스트레스 관리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관리</li> </ul> <p>스트레스 평가 치기어해결진 상담 김정호장 교장</p>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사업장별 맞춤형 접근

- 주치의 사업의 정착화 및 확장
- 방문 회차별로 단계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작업환경측정 건설링 : 50개소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사업장별 맞춤형 접근

- 특수건강검진 유질한 보유 사업장 사후관리 실시
- **목표인원 : 300명**(전년대비 20% 상향부여)

구분	목표	수행방법
1단계	관계기관 회의	안전보건공단의 특수검진 실시 사업장 검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관 회의
2단계	대상자 선정	직업성 유소견자 및 요관철차 다발사업장 작업장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취약사업장 선정
3단계	유관기관 협업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사후관리 요청공문 발송
4단계	사후관리 실시	원거리 사업장: 이동상담 서비스 제공, 근거리: 내방 유도 전화 검진결과 및 당해 검진결과 비교 분석 보호구 착용 실습 및 취급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상 질병 잠재위험이 높은 사업장: 주치의 사업 연계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고위험직종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 2019년 사상구형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실시 후 지속관리 예정
- 뇌심혈관계질환 상담 +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 집체교육 실시
- **목표인원 : 100명**

#### 2019년 건강관리 결과

구분	대상인원	실시인원	참여율
건강관리참여	124명	123명	99.2%

성별	인원(명)	백분율(%)
남자	118명	95.9%
여자	5명	4.1%

연령	인원(명)	백분율(%)
- 30대	17명	13.8%
40대	27명	22%
50대	39명	31.7%
60대 이상	40명	32.5%
총 계	123명	100%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2019년 건강관리 결과 - C-CDCI 적용 (지속관리 필요)

NO	위험 인지	기준	참고자료	평가방법	C-CDCI 위험군	위험률 (123명 검사)
1	흡압	1차 흡연, 2차 흡연(연기) 노출 1. 수축기혈압 130mmHg 이상 2.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단지침)	▶▶▶▶▶ ▶▶▶▶▶ 건강관리자료	59명	48%
2	흡당	1차 흡연, 2차 흡연(연기) 노출 1. 공복 10mg/dl 이상 2. 식후 2시간 140mg/dl 이상 3. 당화혈색소 5.7% 이상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학회 당뇨병학회 당뇨병학회	▶▶▶▶▶ ▶▶▶▶▶ 건강관리자료	31명	25.2%
3	허리 둘레	남자 : 90cm 이상 여자 : 85cm 이상	대한당뇨병학회 (MBO지침, 2012)	▶▶▶▶▶ ▶▶▶▶▶ 건강관리자료	30명	24.4%
4	흡연	현재 흡연	-	▶▶▶▶▶ ▶▶▶▶▶ 건강관리자료	41명	33.3%
5	신체활동부족	PAQ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기준에 준함	PAQ (신체활동부족)	▶▶▶▶▶ ▶▶▶▶▶ 건강관리자료	55명	44.7%
6	콜레스테롤	1차 흡연, 2차 흡연(연기) 노출 1. 총콜레스테롤 200 mg/dl 이상 2. LDL 130 mg/dl 이상 3. TG 150 mg/dl 이상 4. HDL 40mg/dl 이하 1차 흡연, 2차 흡연(연기) 노출 1. 총콜레스테롤 200 mg/dl 이상 2. LDL 130mg/dl 이하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학회 (지침)지침 당뇨병학회	▶▶▶▶▶ ▶▶▶▶▶ 건강관리자료	53명	43.1%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고위험직종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 부산광역시 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 높은 강도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노출 위험 증가
- 원거리 이동서비스와 사상구 인근 학교 내방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목표인원 : 100명**

구분	내용	건강서비스 제공 방법
이동서비스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지원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요청하는 급식종사자들에게 건강서비스 제공 및 필요시 내방 프로그램으로 연계
내방서비스	근로자 건강센터 인근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프로그램 제공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중심으로 신청자를 지원받아 건강 프로그램 제공 1회기 : 뇌심혈관계질환 건강상담 2회기 :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3회기 : 직무스트레스 관련 상담 4회기 : 종합상담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고위험직종 (이동노동자) 건강관리 - 도담도담센터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근로복지기본법 제 28조 등

추진방향 : 휴식공간을 넘어선 이동노동자 종합복지공간 조성,  
이동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센터개요

- 개 소 : 2019년 10월 10일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38, 3층(부전동)
- 운영시간 : 월~금, 14:00 ~ 익일 06:00
- 주요시설 :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탕비실 등
- 사업비 : 2.7억원(시비)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고위험직종 (이동노동자) 건강관리

세부 운영 계획 中 상담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진행)

목표인원 : 50명

구분	생활법률상담	건강상담	금융상담	주거상담	노동복지상담
주요 프로그램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법률 구조	건강상담 및 진료, 건강관리교육, 감정노동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채무상담, 가계부채 등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전월세 대응	노동·노후 상담 및 지원
공공 및 민간 협력 지원(안)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근로자 건강센터	부산은행, 국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등	대한국토지주공사	노동상담소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작업복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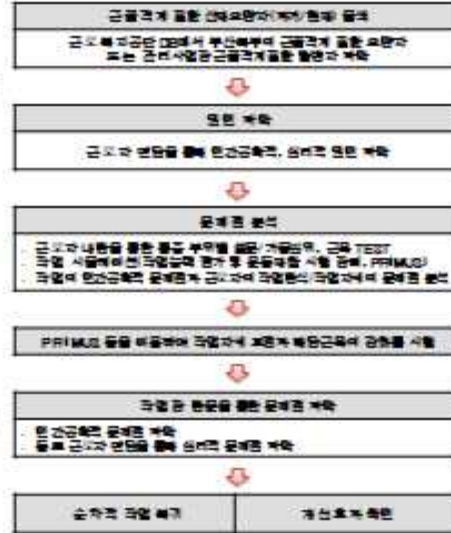
산재나 질환 후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작업복귀 후 작업 중, 작업 간에 불편감 호소하는 근로자  
 심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

목표인원 : 20명

- 근골격계 질환 및 업무복귀 평가(PRIMUS-RS)



- 근육 사용도, 관절반복빈도 평가(포먼근전도/전자각도기)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작업복귀 프로그램 장비



- ◎ PRIMUS
  - 작업능력평가 및 운동재활 장비
  - 손상부위에 대한 평가 및 훈련
  - 다양한 작업동작 구현 가능(작업능력 강화)



- ◎ Speed pulley
  - 도르레를 이용한 관절 운동 장비
  - 관절 운동 회복 등 아주 작은 저항 적용 가능
  - 운동축 자유자재로 변화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작업복귀 프로그램 장비



#### ◎ Sling

- 슬링(줄)을 이용하여 운동 재활에 사용하는 장비
- 삼차원적인 안정화 및 근육강화 운동 가능
- 부드러운 축 이동 가능



#### ◎ Multy smith machine

- 한 곳에서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
- 전신운동에 최적화된 기구
- 한 가지 기구로 다양한 운동 가능

## 5.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창원병원) - 협약 체결



## 6.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지청도청
2	안전보건공단 부산지대본부
3	안전보건공단 경상본부지사
4	부산광역시청
5	부산광역시 교육청
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7	부산부산대학교병원
8	부산상기압발전협력회
9	부산광역시 공업보건연구소
10	부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서비스팀



## 6. 외부자원 활용

### 부산대학교 산하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이사 인력 지원
  - > 교수 3인(70,041천원)
  - > 권공역 2인(7,200천원)
- ◆ 간호사 학원 1인(27,600천원)
- ◆ 장비 지원(150,000천원)
  - > 근골격계 재활 및 업무복귀 기구 (PRIMUS-RS)



#### 부산대학교 환경보건연구센터

- ◆ 기자재 협력(34,000천원)
  - > DataLoa&Analysis software
  - > DataLink&Analysis software



매칭펀드: 288,416,000 (2억 8천)

#### 부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 ◆ 공공의료 연계
  - > (사)이주민과 함께의협력
  - 이주노동자 협력사 (20,000만원)
- ◆ 지역 사회 환경취약지역  
호흡기건강지원사업(6억원)



## 7. 3년 사업의 성과

- 3년간 사후관리 및 주치의 사업장 81개소
- 소규모 주물사업장 보건관리 사업 진행, 메 뉴얼을 바탕으로 보건관리 사업 운영
- 매년 집중타겟 사업을 선정하여 보건관리 취약계층 보건관리 지도
- 부산지역의 사회적 직업건강 이슈에 노/사/관 협업을 통한 적극 중재
- 부산지역의 경우 산재병원 부재로 근로자의 작업복귀 재활 프로그램 시행
- 사업을 진행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명도 확보

구분	이용자수	상담건수					
		계	종합상담	뇌심예방	근골예방	작업환경	심리상담
2017년	7,283	22,502	2045	11,645	5,384	2,130	1,298
2018년	7,419	24,674	2,129	12,964	6,000	1,732	1,849
2019년	7,331	22,553	2,068	11,645	5,411	2,130	1,299

※ 2019년의 경우 12월 11일 기준 적용

## 8. 2020년 사업추진일정

사업 내용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년 관리계획 공유														
직원역량강화워크숍														
작업복귀프로그램														
환경미화원건강관리														
급식종사자건강관리														
도담도담센터 지원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양산분소운영														
자체평가 및 점검														
운영실태평가														
센터 홍보물 위한 캠페인 실시														
최종평가보고서작성														
2021년 관리계획 작성														

## 9. 근로자건강센터의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인 인력운영</li> <li>직업환경의학 전문의(교수)의 의사업무로 직업환경의학적 전문성 확보</li> <li>센터운영의 직업건강 윤리성 확보</li> <li>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주치의 제도의 안정적 운영</li> </ul>	<b>S</b> <b>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 본원과 본소 거리상, 지리적 특성에 의한 이문화 운영</li> <li>직원들의 파트타임 업무 전문성 및 발전에 대한 의식 약화</li> <li>주무기관의 사업모형의 고착화(실적 등)로 사회적 요구도에 능동적이기 어려움</li> </ul>	<b>W</b> <b>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li> <li>근로자건강센터의 확장성</li> <li>근로자건강센터의 평형성 설정에 대한 논의 증가</li> </ul>	<b>S</b> <b>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들의 이직 요구도 증가(근로자건강센터 기관의 본질적 회사 매력도, 복지, 임금, 등)</li> <li>근로자건강센터 구성원들의 에너지감, 직업봉사정신 약화</li> <li>사업 수행형태(위탁기관으로서의 존엄성 및 자율성 부재)</li> </ul>	<b>W</b> <b>T</b>

## 9. 근로자건강센터의 한계점

### vision 2030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인 인력운영</li> <li>직업환경의학 전문의(교수)의 의사업무로 직업환경의학적 전문성 확보</li> <li>센터운영의 직업건강 윤리성 확보</li> <li>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주치의 제도의 안정적 운영</li> </ul>	<b>S</b> <b>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 본원과 본소 거리상, 지리적 특성에 의한 이문화 운영</li> <li>직원들의 파트타임 업무 전문성 및 발전에 대한 의식 약화</li> <li>주무기관의 사업모형의 고착화(실적 등)로 사회적 요구도에 능동적이기 어려움</li> </ul>	<b>W</b> <b>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li> <li>근로자건강센터의 확장성</li> <li>근로자건강센터의 평형성 설정에 대한 논의 증가</li> </ul>	<b>S</b> <b>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들의 이직 요구도 증가(근로자건강센터 기관의 본질적 회사 매력도, 복지, 임금, 등)</li> <li>근로자건강센터 구성원들의 에너지감, 직업봉사정신 약화</li> <li>사업 수행형태(위탁기관으로서의 존엄성 및 자율성 부재)</li> </ul>	<b>W</b> <b>T</b>

## 9. 근로자건강센터의 한계점

### 핵심전략

#### 경쟁우위(S-O)

- ▶ 근로자건강센터 안정적 운영
- ▶ 거점 근로자건강센터로서의 입지 설정

#### 위험대비(S-T)

- ▶ 취약노동자 대상 적극적 진료연계
- ▶ 공적 가치에 기여
- ▶ 사회복지·진료비 보장 과차원 연계

#### 위험최소(W-O)

- ▶ 직원 역량 강화
- ▶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의 거시적 방향설정예 기여

#### 생존대비(W-T)

- ▶ 현재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 ▶ 사업 수행형태 개선
- ▶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안정화 방안확보

## 10. 부산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제언

- 지자체 독자적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부산 근로자 건강센터와 적극적 협업 관계 수립
- 단회성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지속적 노동건강 지킴 사업 관리 단 필요
- 노동정책의 통합적 사업 수행 필요
-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조례 개정 이후의 노동정책 사업 활성화 모니터링 필요

감사합니다

 근로자건강센터 부산



## 토론 1. 도용회(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직무스트레스·감정노동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 법 제79조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및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주”란 용역, 위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 노동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안전보건점검과 작업환경개선 노력
2. 노동자의 작업 전 사전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실시
3. 노동자 안전 장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4. 제11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노동현장 출입 허용 등 협조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추진목표와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장애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재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 인식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재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시행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현황 등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3.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 사업
  4. 시 및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방안
  5.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3.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4.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5. 서비스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심리상담 및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노동안전보건 연구 활동에 종사한 사람
  2. 노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한 사람
  3.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노동자 건강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자 건강증진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3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및 노동자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보급
3.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4. 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5. 노동자의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6. 산재 예방 및 건강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지원
8. 서비스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심리상담 및 지원
9.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구제절차 상담 및 지원
10.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
11.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및 노동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부산지역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지  
역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이 밀집된 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노동자 건강 증진 관련 실적의 평가 반영) 시장은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토론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토론 3.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